

1. 개정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업소 단위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시 제조소등이 아닌 사업소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단서)
- 나. 평가 종료일에 평가표를 관계인에게 확인받는 것 대신 평가 중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소명기회로 변경함(안 제6조)
- 다.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를 "소방청 및 지방 소방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평가반장은"으로, "평가반에 포함시킬"을 "평가자문으로 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반원"을 "평가반원 및 평가자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 중 확인된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합 계	500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10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0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5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1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0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5	
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10	
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자격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20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5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체계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5	
나.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5	
다.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10	
라.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10	
마.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10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및 설비, 운전절차 등 변경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1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10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10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5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마.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20	
바.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15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5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면담,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1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15	
9.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배관공사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가?	5	
나. 이송취급소 배관 인근 공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1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5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예방규정의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사업소 내·외 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해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5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1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30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500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10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0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5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1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0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5		
사.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10		
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자격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20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5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체계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5		
나.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5		
다.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10		
라.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10		
마.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10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및 설비, 운전절차 등 변경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1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10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10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5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마.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20		
바.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15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5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1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15		
9.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배관공사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가?	5		
나. 이송취급소 배관 인근 공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1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5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예방규정의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사업소 내·외 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해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 (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5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1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30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 · 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등급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하여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조소등 구분란에는 예방규정 평가대상 제조소등 현황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란에는 예방규정 평가대상 제조소등 번호 모두를 기재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하여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5),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고 제2호에 따른 환산점수 산정시 총 배점과 획득점수에서 모두 제외된다.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사업소명		설치자 성명	
사업소 소재지			
제조소등 구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앞 쪽)

사업소명		설치자	
사업소 소재지			
제조소등 구분	뒤 쪽 참조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뒤 쪽 참조

1.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시기

평가연월일		차기 정기평가 시기	
평가구분	[]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평가결과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2.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항목	평가점수
계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등에 관한 사항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상 목록

(뒤 쪽)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원칙 등) ① (생 략)	제3조(평가원칙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 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u>정량적으로 평가한다.</u>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② ----- ----- ----- ----- ----- <u>평가한다.</u>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소방 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u>소 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 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u> 평가반을 구성한다.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 ----- ----- <u>소 방청 및 지방 소방관서 소속 공 무원을 포함하여</u> ----- -----.
②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 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 방청 소속 <u>소방공무원</u> 으로 한 다.	② ----- ----- ----- <u>공무원</u> ----- -----.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전문가 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평가반에</u>	③ <u>평가반장은</u> ----- ----- ----- ----- <u>평가 자문</u>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으로 둘 -----.

1. (현행과 같음)

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4. -----
----- 5년 -----

5. (현행과 같음)

④ -----
-- 평가반원 및 평가 자문-----

----.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단서 신설>

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현장검사 : 제2조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

가. ~ 다. (생략)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가. · 나. (생략)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라. (생략)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 .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

1. ----- 제2조제1항제6호-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별지 제1호서식-----
-----.

라.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 중 확인된 사실 등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 사본은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평가반장이 보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③ (생략)

<신설>

대해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
--- 60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